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6. 4 선고 2023나4978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6. 4 선고 2023나49785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9 선고 2022가단536155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 유한회사

피고, 항소인 B

변론종결 2024. 5. 10.

판결선고 2024. 6. 4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9. 선고 2022가단5361550 판결

주문

-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4. 5. 체결된 증여계약을 11,086,00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11,086,003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임은하, 판사 김용두, 판사 최성수